

폐농약용기 수거가능 품목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주세요.
-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유기농업자재 등 농약 유사용기는 수거 불가합니다. (해당 자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대상자에 한해 수거합니다.(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는 수거 대상 제외)
- 폐농약잔류액은 공단에서 수거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황

구분	소재지	관할구역	비고
영암사업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구룡동길 46	광주, 영암 나주, 화순, 강진	무인운영 (반입일월요일)
해남사업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머리길 125	해남, 완도, 진도	무인운영 (반입일화요일)
함평사업소	전남 함평군 엄다면 곤제로 614	함평, 목포 무안, 신안, 영광	무인운영 (반입일수요일)
순천사업소	전남 순천시 조례동 매봉길 13	순천, 광양, 여수 고흥, 보성, 장흥, 구례	무인운영 (반입일목요일)
담양사업소	전남 담양군 수복면 송정길 81	담양, 곡성, 장성	집하장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안내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처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17, 3층
 - 연락처 : 062) 949-0765
- 대표전화
농업용 폐비닐과 빈 농약용기 수거 문의는
ARS 1661-6620 으로 문의해주세요.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 · 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1

발생(농가·마을)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 (마대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2

분리배출(공동집하장)



- 분리 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3

수거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



-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
내가 버린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통영상을
시청해보세요.
”
마을 공동집하장
구글맵 지도

4

전표발행(한국환경공단)



-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수거비 지급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급	A급비닐	B급비닐	C급비닐
지자체	120원/kg	100원/kg	80원/kg
※ 지자체별 지급 단가는 상이함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공단	100원/개 (300원/kg)	100원/개 (1,600원/kg)	80원/개 (3,680원/kg)
※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처리 (자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 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

[수거등급판정기준]

등급	폐비닐 상태	비고
A급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밀칭로텐·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자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① 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밀칭로텐·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첨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①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밀칭로텐·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D급	①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등외품질

등급별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적용기준은 이물질 상태에 따라 상·하각각 20% 이상 차등지급됩니다.

[수거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 수거장려금 지급 표준(안)]

구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
A등급(인센티브)	120원/kg	15~25%	
B급	100원/kg	40~50%	지자체 평균단가 100원/kg 기준
C급(디스인센티브)	80원/kg	15~25%	

※ D등급(최하 등급) 판정 시 수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지역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직접 연락 하시면 신속한 수거가 가능합니다.

- 연락처는 공단(062-949-0765)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